

의안번호	2216375
의 퇴 인	김기웅 의원
회 답 일	2026. 3. 31.
추계번호	26A0522
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3조제3항제6호 신설 (문화관광형시장의 지정·육성)	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관광형시장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음 - 문화관광형시장의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기존 규정에 “외국인 관광객의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서비스 지원 체계 조성”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	재량규정
2	안 제16조제1항(청년상인의 육성)	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청년상인의 육성을 위하여 청년상인에 대하여 창업에 따른 임대료·관리비·공과금 및 점포개선을 지원하고, 청년상인의 공동 마케팅·온라인 판매 등 홍보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음 - 청년상인의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기존 규정에 “창업에 따른 관리비·공과금 지원”과 “공동마케팅·온라인 판매 등 홍보지원”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	재량규정
1	안 제17조제1항 (빈 점포의 활용 촉진)	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 등에 있는 빈 점포를 비영리법인, 단체 또는 개인 등이 디지털·세대협업·사회적경제 거점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음 - 빈 점포의 활용 용도에 관한 기존 규정에 “디지털기반 점포 운영 장소, 세대 간 상생을 도모하는 통합형 점포 운영, 사회적 기업 또는 협동조합 제품 홍보 및 전시·판매를 위한 장소”를 추가하려는 것임	재량규정

Ⅱ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등 근거 규정
1	안 제13조제3항제6호 신설 (문화관광형시장의 지정·육성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16조제1항(청년상인의 육성)	
1	안 제17조제1항 (빈 점포의 활용 촉진)	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은 이 법에 따라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지원 사업의 범위에 “외국인 관광객의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서비스 지원 체계 조성”을 추가하고(안 제13조제3항제6호 신설), 청년상인의 육성 지원 사업 범위에 “①창업에 따른 관리비·공과금 지원, ②홍보 지원”을 추가하는 한편(안 제16조제1항),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빈 점포의 활용 용도에 “①디지털기반 점포 운영 장소, ②세대 통합형 점포 운영 장소, ③사회적기업 또는 협동조합 제품 홍보 등을 위한 장소”를 추가하려는 것임(안 제17조제1항)
- 개정안에 따라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지원 사업 및 청년상인 육성 지원 사업의 범위가 확대되고,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빈 점포의 활용 용도에 디지털·세대협업·사회적경제 거점 등이 추가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이 증가할 수 있음
 - 현재 중소벤처기업부는 문화관광형시장과 청년상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재정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, 빈 점포의 활용만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직접적

인 재정 지원 사업은 없으나, 일부 재정사업의 경우 특성화시장 육성 등을 위해 필요하면 전통시장 내 빈 점포를 다른 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

- “문화관광형시장 육성” 및 “디지털 전통시장” 사업¹⁾은 지역별 특성화시장을 육성하고 전통시장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기 위해 예산 일부를 활용하여 전통시장 내 빈 점포에 고객쉼터 등 복합문화공간이나 공동배송센터 등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
- “복합청년몰 활성화” 사업²⁾은 전통시장 내 청년점포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빈 점포를 청년상인의 창업보육이나 실습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

* 2026년도 예산: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207억 5,000만원, 청년몰 활성화 사업 20억원

- 개정안에 따라 문화관광형 육성 지원 사업 및 청년상인의 육성 지원 사업의 범위가 확대되고, 빈 점포 활용 용도 추가에 따른 신규 재정사업이 추진될 경우 재정지출이 증가할 수 있음

□ 개정안에 따른 소요 비용은 문화관광형시장 내 외국인 관광객의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서비스 지원 체계 조성 사업의 규모, 청년상인의 창업에 따른 관리비·공과금 지원 및 홍보 지원 사업 규모, 빈 점포에 대한 활용 수요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투입 계획에 따라 결정될 것이나, 현 시점에서 이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으므로 소요 비용을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

- 개정안에 규정된 “외국인 관광객의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서비스 지원 체계 조성”만으로는 문화관광형시장 내 외국인 관광객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추가적인 재정소요를 추계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가 부재함
- 또한 청년상인의 관리비·공과금의 평균 금액, 홍보 지원 사업의 구체적인 내역 및 재정 소요 등에 관한 자료가 부재하여, 청년상인 육성 지원을 위한 추가 사업 추진에 따른 재정소요의 추계가 곤란함
- 빈 점포를 디지털·세대협업·사회적경제 거점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에 대한 지출 증가분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빈 점포 중 디지털·세대협업·사회적경제 거점

1) 사업명: 시장상권경영혁신지원(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, 4154-304)-특성화시장육성-문화관광형시장 육성/디지털 전통시장

2) 사업명: 시장상권경영혁신지원(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, 4154-304)-특성화시장육성-청년상인육성-청년몰활성화

등으로 이용될 점포의 수를 추정하여야 하나, 이를 추정하기 위한 사업 수요에 대한 정보가 부재함

－ 참고로,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「전통시장·상점가및점포경영실태조사」에 따르면 2024년 전국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 점포 22만 4,437개 중 빈 점포는 2만 4,247개(10.8%)임

○ 아울러, 사업의 내용과 예산 규모가 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재량지출성 사업의 특성상 지출 수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과 정책 방향, 재원 투입 의지에도 영향을 받을 것이므로 현 시점에서 소요 비용을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

□ 따라서 개정안을 시행하는 데 따른 재정지출 증가액을 추계할 수 없으므로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에 해당

Ⅲ. 부대의견

☐ 없음

Ⅳ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주계세제총괄과	장설희	김신애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장설희	02-6788-4654	shjang@assembly.go.kr